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발급하는 신고증과 관련하여, 최초 신고증 발급 신청 시만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실하는 경우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업무 처리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온라인 재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제4항, 제11조 제3항, 별지 제3호의2서식)

통신판매업자가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신고증 분실 관련 절차 정비 등(안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할 때 기존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절차를 정비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서식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27. ~ 8. 1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는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으면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 재발급 신청 사유를 해당란에 √ 표 하십시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210mm × 297mm [백상지 80g/㎡]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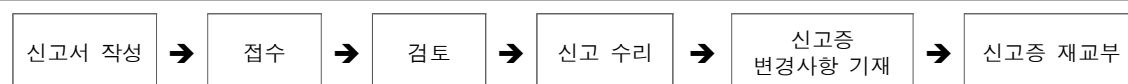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 × 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휴업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서
[]영업재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 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② (생략) <u><신 설></u>	<u>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으면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u>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452